

#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서

## (시설급여)

이용자, 제공자 및 대리인(보호자)은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 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.

| 계 약 당 사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이<br>용<br>자<br>(<br>갑<br>)           | 성 명          | (인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등 급<br>(인정번호) | 등외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생년월일         | 년    월   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연 락 처         |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 소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 타       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일반 <input type="checkbox"/> 12%경감대상자 <input type="checkbox"/> 8%경감대상자 <input type="checkbox"/> 기초 <input type="checkbox"/> 등외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
| 제<br>공<br>자<br>(<br>을<br>)           | 시 설 명        | (주)다리피가은요양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시설종류          | 노인요양시설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대 표 자<br>성 명 | 손 미 현 (인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연 락 처         | 031) 482-1118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 소          |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포공원로 54, 301호(프라임아트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
| 대<br>보<br>호<br>자<br>(<br>또<br>는<br>) | 성 명          | (인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 계           | 갑' 의(    )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생년월일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연 락 처         |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 소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

제1조 【 목 적 】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

(장기요양급여수급자)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.

제2조 【 계약기간 】

- ① 계약기간은    년    월    일부터    년    월    일로 한다.
-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.
- ③ ‘을’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‘갑’(또는‘병’)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, ‘갑’(또는 ‘병’)은 이후 15일 이내에 ‘을’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.
-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‘갑’(또는 ‘병’)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. (단,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.)
-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(장기요양 인정등급, 장기요양 급여비용, 비급여비용 등)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.
- ⑥ ‘갑’(또는 ‘병’)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.

제3조 【 입소 · 이용료 납부 】

- ① ‘갑’의 입소당월 이용료는    년    월    일에 납부하기로 한다. 입소 당월 이후 매월 이용료는 매월 5일 납부하기로 한다.( 5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)
- ② ‘갑’ (또는 ‘병’)은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 한다.
- ③ ‘갑’의 이용료 납부방법은 현금(통장입금), 또는 카드결재로 한다.
- ④ ‘갑’ 또는 ‘병’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. 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. 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‘갑’ 또는 ‘병’이 별도 부담한다.

◇ 시설급여 (1일)

| 구 분  |                   | 1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등급    | 3등급 ~5등급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|
| 요양급여 | 노인요양시설(구 노인복지법)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|
|      | 노인요양시설(단기보호에서 전환)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|
|      | 노인전문요양시설(구 노인복지법) | 90,4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83,910 | 79,240   |
|      | 노인요양시설(개정법)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|
| 비급여  | 식재료비, 간식비         | * 식재료비 1식 : 3,500원<br>* 간 식 1일 : 1,000원 |        |          |
|      | 경관식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|
|      | 이미용비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|

※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(위원장 : 보건복지부 차관)가 결정,  
고시하는 『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』(보건복지부 고시)에 따름

< (안내) 수급자 자격별 본인일부부담 비율 >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시설급여 | 재가급여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
| 일 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%  | 15%  |
| 기초수급권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0%   | 0%   |
| 기타 의료수급권자<br>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<br>자격전환자(희귀난치성,<br>만성질환자)      | 12%  | 9%   |
| 저소득층(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<br>위한 소득,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<br>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) | 8%   | 6%   |

※ [근거규정] 노인장기요양보험법

제40조(본인일부부담금)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. 다만, 수급자 중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재가급여 :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
2. 시설급여 :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

◇ 세부내역(30일 기준)

| 구 분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1등급       | 2등급       | 3~5등급     | 내 역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총 계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요양보<br>험<br>부담비<br>용 | 요양급여비용(80%)  | 2,713,500 | 2,517,300 | 2,377,200 | 일반대상자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요양급여비용(88%)  | 2,713,500 | 2,517,300 | 2,377,200 | 감경대상자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요양급여비용(92%)  | 2,713,500 | 2,517,300 | 2,377,200 |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요양급여비용(100%) | 2,713,500 | 2,517,300 | 2,377,200 | 시설수급대상자          |
| 개인<br>부담비<br>용       | 요양급여비용(20%)  | 887,700   | 848,460   | 820,440   | 일반대상자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요양급여비용(12%)  | 670,620   | 647,070   | 630,240   | 감경대상자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요양급여비용(8%)   | 562,080   | 546,360   | 535,170   |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식사재료비+간식비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간식<br>1일 1,000 원 |
|                      | 경관식+피딩재료대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피딩재료대<br>1일 원    |
| 입소비 금액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
< (안내)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>

1.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-

1) 기본원칙

-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,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, 이. 미용비이며,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
-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(실비)만을 산정해야 하며, 별도의 이윤부가 불가

2) 세부기준

(1) 식사재료비 : 경관영양 유동식,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

(2) 상급침실 이용료

- 1인실 또는 2인실 사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수납
- 상급침실은 (a) 반드시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 있고(파티션, 커튼 등은 불가), (b)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며, (c) 노인복지법 시설. 설비기준에 의거한 1인당 면적기준(개정법 6.6㎡)을 충족하여야 함

(3) 이. 미용비 :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. 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, 단 시설종사자. 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, 손. 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

2.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: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,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

**제4조 【 계약자 의무 】** ‘갑’과 ‘을’ 그리고 ‘병’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

① ‘갑’의 의무

1. 월 이용료 납부
2.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
3.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
4.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
5.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

② ‘을’의 의무

1. ‘갑’의 건강관리 협조
2. ‘갑’의 신변이상을 ‘병’에게 즉시 연락
3.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,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
4.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
5. 기타 ‘갑’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

③ ‘병’의 의무

1. ‘갑’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
2. ‘갑’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
3.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
4. ‘갑’의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‘을’에게 통보
5.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

**제5조 【 계약해지 요건 】**

① ‘갑’의 해지

1. ‘갑’과 ‘병’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, 제2조 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‘을’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.

② ‘을’의 해지

1. ‘갑’의 건강진단 결과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
2.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
3. ‘갑’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(단, ‘을’은 ‘갑’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‘갑’또는 ‘병’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)

**제6조 【 퇴소 】**

- ① ‘을’은 제5조②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‘갑’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‘갑’과‘병’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, 본원 소정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‘을’에게 제출하고 ‘을’의 보관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. 단, 사유물품을 1년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‘병’(또는 ‘갑’)에게 통보 후 ‘을’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해 ‘갑’ 또는 ‘병’은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.
- ③ ‘을’은 ‘갑’이 퇴소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‘갑’이 지정한(또는‘병’)계좌로 지체 없이 지급한다.

**제7조 【 입소물품 】**‘갑’은 시설입소 시 개인물품을 ‘을’과 협의하여 반입할 수 있다. 입소 시 날카로운 물건은(칼, 가위등) 반입 금지됩니다. 어르신에게 날카로운 물건을 맡기지 마십시오.

**제8조 【 면회 및 외출·외박 】**

- ① ‘갑’의 면회시간은 매일 11:00시부터 16:00까지로 한다.  
(단 ‘갑’ 과 ‘을’ 또는 ‘병’이 동의할 경우 변경 할 수 있다).
- ② ‘갑’은 외출·외박 시 사전에 ‘을’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- ③ ‘을’이 제공하는 음식물 이외의 음식물을 ‘갑’이나 ‘병’이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‘을’과 협의 후에 반입하여야 한다.
- ④ 외출·외박 중 ‘갑’에게 신체적·정신적 변화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‘갑’ 또는 ‘병’은 ‘을’에게 즉시 사실을 알려야 한다.
- ⑤ 외박 1일부터 최대 10일까지는 1일 수가와 식비가 50%로 계산한다.

**제9조 【 시설관리 】**

- ① ‘을’은 보건, 위생, 방범, 방화 기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 직원이 거실을 출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- ② ‘을’은 원무 행정상 필요한 경우 입소자의 거실을 재배치 할 수 있다.

**제10조 【 건강관리 】**

- ① ‘을’은 ‘갑’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‘갑’과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.

- ② ‘갑’이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が必要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- ③ 의사의 진료결과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나 월 1회 이상 장기간 진료가 요구되는 경우 진료비와 부가서비스 경비(교통비, 외부간병인 등)는 ‘갑’ 또는 ‘병’에게 별도 징수한다.
- ④ ‘을’은 입소 시 갑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기록함은 물론, 갑에 대한 적절한 건강관리를 하여야 하며, 갑의 건강유지, 악화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
- ⑤ ‘을’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활력증상 확인, 투약관리, 욕창관리, 낙상방지 등 건강관리 활동을 하여야 한다.
- ⑥ ‘을’은 ‘갑’이 의사로부터 월 2회 이상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, 이상시 지체 없이 ‘병’에게 통보한다.
- ⑦ ‘을’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물리치료, 재활치료를 제공해야 한다.

**제11조 【 시설물 배상 】**

- ① ‘갑’은 ‘을’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, ‘갑’에 의한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‘갑’ 또는 ‘병’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.
- ② ‘갑’ 또는 ‘병’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‘을’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‘갑’ 또는 ‘병’은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.

**제12조 【 위급 시 조치 】**

- ① ‘을’은 ‘갑’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병원, ‘갑’(또는 ‘병’)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‘병’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
- ② ‘병’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.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- ③ ‘갑’이 사망하였을 경우에 ‘을’은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고 ‘병’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 단 ‘병’과 사전에 협약이 있을 경우, ‘을’이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.
- ④ 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불가능할 때 ‘을’은 ‘갑’의 입소 입소월액 또는 시설의 운영비로 화장에 의한 장례를 집행하고 추후에 ‘병’과 정산할 수 있다.

**제13조 【 임종 및 장례 】**입주자의 임종 및 장례절차는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와 무 연고자를 구별하여 정한다.

①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

1.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'병'과 협의하여 결정한다.
2. 장례는 '병' 또는 신원인수인의 정함에 따라 가족이 장례절차의 모든 것을 수행하게 한다.

② 무연고자

1.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'을'의 책임 하에 결정한다.
2. 장례는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절차에 의거하여 장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.
3. 1개월 이내 관할 동(읍, 면)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한다.

**제14조 【 식사 및 간식 】**

- ① '을'은 1일 3식 및 간식을 '갑'에게 제공하며, '갑'의 상태에 따라 특별식을 제공할 수 있다. 특별식(경관급식비 등) 비용이 일반 수급자의 식재료비/간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'갑'또는 '병'이 별도 부담한다.
- ② '을'은 식단표 및 간식제공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'갑'에게 제공하고 게시하여야 한다.

**제15조 【 영양실의 배정 】**'갑'의 영양실 배정은 입소순서에 따르며, 입소 후 '갑'의 건강상태, 수발조건,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'갑' 또는 '병'의 의견을 반영하여 '을'이 조정할 수 있다.

**제16조 【 개인정보 보호의무 】**

- ① '을'은 '갑'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.
- ② '을'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'갑'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.
- ③ '갑'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대한 승낙은 서면(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)으로 한다.
- ④ '갑'은 '을'이 수집·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.
- ⑤ '을'은 '갑'의 사생활을 존중하고,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.

**제17조 【 기록 및 공개 】**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,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.

**제18조 【 배상책임 】**

-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'을'은 '갑'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.
- 1.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'갑'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
  - 2.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'갑'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
  - 3.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'갑'을 부상케 하거나,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
  - 4. 학대(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 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)로 인하여'갑'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,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
-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'갑'은 '을'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.
- 1.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
  - 2. '을'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'갑'이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
  - 3. '갑'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
  - 4. '갑'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

**제19조 【 이용계약서의 해석 】**

-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.
- ②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소재지 법원에 제기한다.
-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.

2024년 11월 28일

|       |             |       |     |
|-------|-------------|-------|-----|
| (계약자) | '갑' 이 용 자   | 0     | (인) |
|       | '을' 대 표 자   | 손 미 현 | (인) |
|       | '병'대리인(보호자) | 0     | (인) |

##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

|       |   |        |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|--------|----------------|
| 수 급 자 | 0 | 주민등록번호 | 490725-2009715 |
| 주 소   | 0 |        |                |

상기 본인은 본 장기요양기관이 본인에 대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에 동의한다.

### 1. 정보수집

- 기본정보(입소자/보호자) :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장기요양인정 등급
- 개인이력 : 가족관계
- 질병관련 이력 : 병력, 처방전내역, 의무기록, 신체기록
-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욕구조사 : 입소자의 생활습관, 기호, 신상정보
- 기타 장기요양계획 수립과 관련한 정보 등

### 2. 수집정보 활용

-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의 연속성을 위하여 제공기관 간의 서비스 연계와 관련한 사항(장기요양서비스연계 종료기록지 등)에 관한 정보를 제공
-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등에 대한 자료의 제공

### 3. CCTV 영상물

"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", "개인정보 보호법"에 의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함에 있어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.

- 1) 이용 목적: 어르신의 사생활 영상은 어르신 관리를 위해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, 개인 식별, 부정 행위와 비인가 사용 방지,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를 위해 사용합니다.
- 2) 정보주체의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 (인종, 민족사상 종교, 정치성향 및 범죄기록 등)는 수집하지 않습니다.

### 4. 보유 및 이용기간

- 위에서 수집한 개인 정보는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 동안 유효하며, 개인 정보가 포함된 서류의 경우 퇴소 후 5년 동안 보관 후 폐기.

**2024년 11 월 28 일**

|     |          |      |
|-----|----------|------|
| 입소자 | <b>0</b> | (서명) |
| 보호자 | <b>0</b> | (서명) |
| 관 계 | 자        |      |